

국제해양정세리포트

No.25

2024/7

발행인 김종덕 | 총괄 박수진 | 감수 최지연 | 담당 이서희·황수연

Email dokdo.oceanlaw@kmi.re.kr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 문의 독도·해양규범연구실(051-797-4707)

Contents

국제법원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2

ITLOS 기후변화에 있어 유엔해양법협약, 인권 그리고 국제해양법재판소

지역별 동향

아시아 9

필리핀 필리핀 선박에 대한 중국의 공격에 대해 유엔총회 개입을 촉구하는 결의안
필리핀 하원에 제출
필리핀 외교부, 대륙붕 외측한계 대륙붕한계위원회 제출

베트남 제34차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 회의에서 협약 이행 촉구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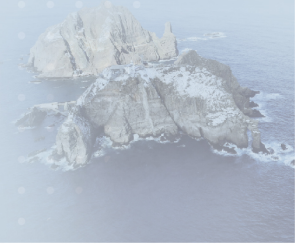
행사안내

3개월 내 행사 계획 1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국제해양정세리포트는 최신 글로벌 동향을 소개하는 월간지로 이메일로 배포하고 있으며,
홈페이지(www.kmi.re.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 수신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051-797-4707) 또는 이메일(dokdo.oceanlaw@kmi.re.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해양법재판소

ITLOS

전문연구원 민영훈

기후변화에 있어 유엔해양법협약, 인권 그리고 국제해양법재판소

2024년 5월 21일, ‘기후변화 및 국제법에 관한 소도국 위원회(COSIS: Commission of Small Island States on Climate Change and International Law)’의 요청에 따라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는 기후변화에 관한 권고적 의견을 발표했다. 일부 학자들은 ‘해석에 대한 맥락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으로 이번 권고적 의견을 환영했지만, 다른 학자들은 재판소의 ‘해석적 모호성과 유엔해양법협약(UNCLO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조항의 해석에 대한 외부 규칙의 선택적(및 투명하지 않은) 참조’를 지적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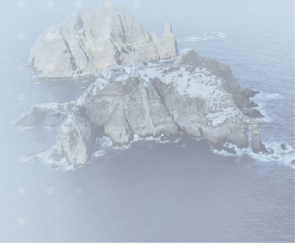
특히, 이번 ITLOS 권고적 의견이 외부 규칙 참조와 관련하여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과 적용을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과 파리협정(Paris Agreement) 등 다양한 국제문서와 법제도를 참조하고 있지만, 인권협약 등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만 언급하고 있어 향후 인권에 근거한 국가 책임 또는 개인의 피해보상과 관련해서 사법적 해석의 모호함이 여전히 남게 되었다.

인권 및 해양법 그리고 국제해양법재판소

전통적으로 해양법은 국제공법의 한 분야로 국가 간 규율을 중심으로 이해된다. 다만,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 유네스코(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대표가 “인권이 효력을 가지려면 해양법에 의해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해양법에서 인권의 필요성이 강조된 것은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¹⁾

특히, 선박과 선원의 체포 및 억류와 관련하여 유엔해양법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외국선박내에서의 형사관할권(제27조), 기국의 의무(제94조), 지원제공 의무(제98조), 신속한 석방(제292조) 등은 유엔해양법협약에서 인권이 다양한

1) Thir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 (1973-1982), concluded at Motebo Bay, Jamaica on 10 December 1982, A/CONF.62/C.3/SR.5, para.6.



국제해양법지판소

ITLOS

영역에서 중요하게 역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ITLOS는 판결을 통해 유엔해양법협약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인권의 틀을 확립했는데, 특히 ‘사이가호 사건(M/V Saiga)’에서 아래와 같이 판시했다.

“비록 이 협약은 선박의 나포에 대한 무력사용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협약 제293조에 의해 적용되는 국제법은 가능한 한 무력사용을 피해야 하며, 무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필요한 것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인류에 대한 고려(considerations of humanity)는 국제법의 다른 분야처럼 해양법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²⁾

ITLOS는 이후 신속한 석방 및 잠정조치 관련 사건에서 ‘인류에 대한 고려(considerations of humanity)’를 강조하여,³⁾ 이에 대한 일련의 법리를 구성했다. 다만, 신속한 석방 또는 잠정조치 사건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인권에 대한 언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념은 판례 또는 재판연구에서 대체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법적 판단과 결정적 판단 기준에서 그 역할이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에 대한 고려’는 해양법과 국제인권법 사이를 연결하는 상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인류에 대한 고려’가 외부 규칙의 참조와 연계할 경우 사법절차에 있어서 실용적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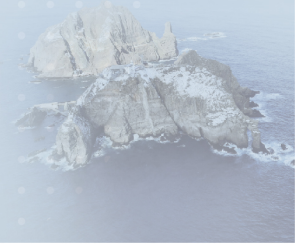
체계적 통합 원칙(Principle of Systemic Integration)의 적용

‘체계적 통합 원칙(principle of systemic integration)’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VCLT: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제31조 제3항c호에 명시되어 있다. VCLT의 이 조문은 국제법을 하나의 전체적인 체계로서 이해하고, 국제법 체계가 국제법에 의해 체결된 모든 조약의 필수 요소에 따라 구성된다는 것에 근거하고 있다.⁴⁾ 이 원칙은 법 적용 기관이 조약의 성안과 관련된 광범위한 규범적 환경을 조사하고 조사가 이루어진 규범적 환경(예를 들어, 기타 국제법)을 고려하여 성안된 문서를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상정하여 법을 해석한다.⁵⁾ 결과적으로 체계적 통합

2) *M/V SAIGA (No.2)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v. Guinea)*, Judgment, ITLOS Reports 1999, p.10, para.155.

3) *Enrica Lexie (Italy v India)*, Provisional Measures, Order of 24 August 2015, ITLOS Reports 2015, p.182; *M/V Virginia G (Panama v Guinea-Bissau)*, Judgment, ITLOS Reports 2014, p.4; *Juno Trader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v Guinea-Bissau)*, Prompt Release, Judgment, ITLOS Reports 2004, p.17.

4) Oliver Dörr, Kirsten Schmalenbach (2018),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A Commentary*, Springer Link.



국제해양법지판소 ITL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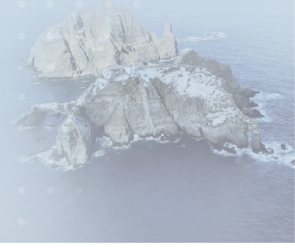
원칙은 법 적용 기관이 조약 등 국제법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관련하여 규범적 환경을 고려하여 적용 또는 준거 법의 범위를 설정하고 이를 통해 법의 흠결 또는 공백을 채워서 법을 적용하도록 요구한다. 즉, 체계적 통합 원칙은 국제법의 해석과 준거법(application law)의 범위 확장의 기능을 하며, 이는 유엔해양법협약 제293조제1항에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유엔해양법협약 제293조는 일차적 규범이며, 이는 유엔해양법협약을 해석할 때 인권의 체계적 통합을 허용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유엔해양법협약의 체계적 통합은 VCLT 제31조제3항c호에서 언급된 체계적 통합보다 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VCLT는 관련 외부규칙이 '당사국간의 관계(in the relation between the parties)'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⁶⁾

ITLOS는 권고적 의견에서 협약과 외부규칙의 규정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관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유엔해양법협약 제293조제1항의 체제통합의 원칙을 적용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ITLOS는 체제통합의 원칙을 해석장치로 채택하면서도 해당 법의 적용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이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 ITLOS는 유엔해양법협약 제293조제1항을 통해 협약이 국제인권법을 포괄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을 회피했다. 이는 ITLOS의 이번 권고적 의견에서 키티차사레(Kittichaisaree) 재판관이 "ITLOS가 '기후변화는 현존하는 위협을 야기하고, 인권 문제를 고조시키고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고 단순히 언급 할 뿐, 권고적 의견에서 요청하고 있는 문제로서 인권을 다루기 위해 협약 제293조를 다루는 것은 회피하고 있다."라는 개별 의견(separate opinion)을 실시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ITLOS의 권고적 의견이 인권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의견은 키티차사레 재판관의 의견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폴락(Paullak) 재판관과 카피(Caffi) 재판관의 개별 의견에서도 이 같은 의견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ITLOS가 유엔해양법협약 제293조의 체계적 통합 원칙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 국제인권법을 유엔해양법협약의 외부규칙으로 편입할 수 있을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권과 기후변화 그리고 해양법 사이의 상호연관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5) International Law Commission(2006), Fragmentation of International Law: Difficulties Arising from the Diversification and Expansion of International Law, tA/CN.4/L.682 and add.1, Report of the Study Group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finalized by Mr. Martti Koskenniemi.

6) Richard Gardier(2015), Treaty Interpret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pp.313-319.



국제해양법지판소

ITLOS

인권, 기후변화 그리고 해양법의 상호연관성

인권, 기후변화, 그리고 해양법 간 상호 연관성과 관련해서는 상당량의 증거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증거들은 국제문서, 국가관행, 사법판단(판례 및 권고적 의견 등), 국제기구 관행을 포함한 다양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은 제1조제1항(4)에서 해양환경오염을 “생물자원과 해양생물에 대한 손상, 인강의 건강에 대한 위험, 어업과 그 밖의 적법한 해양이용을 포함한 해양활동에 대한 장애, 해수이용에 의한 수질악화 및 쾌적도 감소 등과 같은 해로운 결과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나 에너지를 인간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강어귀를 포함한 해양환경에 들여오는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 본 규정은 해양오염과 인권 사이의 연결고리를 언급하고 있다. 즉, 유엔해양법협약은 인간의 건강에 대한 위험을 해로운 결과의 하나의 예시로 명시하여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존을 다루는 협약 제12부가 인권과 연결됨을 확인하고 있다. 더불어 유엔해양법협약 제235조제2항은 “각국은 자국 관할권하에 있는 자연인이나 법인에 의한 해양환경 오염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자국의 법제도에 따라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이나 그 밖의 구제를 위한 수단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ITLOS는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이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해양환경오염의 정의에 포함된다는 결론에도 불구하고, 인권과 책임과의 연결고리만 확인하고 손해에 대한 필요한 결론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반면, ITLOS가 권고적 의견에서 언급한 파리협정에서는 그 전문에서 “기후변화가 인류의 공통 관심사임을 인정하고, 당사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행동을 할 때 양성평등, 여성의 역량 강화 및 세대 간 형평뿐만 아니라, 인권, 보전에 대한 권리, 원주민·지역공동체·이주민·아동·장애인·취약계층의 권리 및 발전권에 관한 각자의 의무를 존중하고 촉진 및 고려해야 한다.”라고 명시적으로 인권에 관한 고려를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ITLOS의 이번 권고적 의견 심리 절차에서 콩고, 이탈리아, 모리셔스, 칠레, 나우루, 미크로네시아 등 다수의 국가들이 “인권, 기후변화 및 해양법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으며 따라서 ITLOS가 국제인권법을 권고적 의견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기했다.

특히 기후변화와 인권과의 관계에서 최근 미주인권재판소(IACtHR,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와 유럽인권재판소(ECtHR,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의 결정은 상당히 참고할 만하다. 2024년 3월 22일, 미주인권재판소는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 관련 사건에 대해 결정하면서 처음으로 대기, 물 및 토양 관련 오염을 포함시켰다. 또한 미주인권



국제해양법재판소

ITLOS

재판소는 선언 및 공표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이들은 기후변화 완화 의무를 이행할 때 국가들이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미주인권재판소는 기후변화에 있어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해 건강한 환경권을 국제법상 강행 규범(peremptory norm)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2024년 4월 9일, 유럽인권재판소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첫 번째 판결을 발표했다. 이 판결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기후변화의 다양한 부정적 영향과 미래 및 현존 인권 향유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영향의 위험성 사이의 연계를 인식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기후변화와 인권 향유의 일반적 연계를 근거로 회원국의 일차적 의무는 현재와 미래에 회복할 수 없는 기후변화 미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효과적인 규제와 조치를 채택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러한 인권과 기후변화에 대한 관련성은 2022년 7월 28일 채택된 유엔 총회 결의에서도 볼 수 있다. 이 결의는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이러한 권리가 기타 다양한 인권 및 현존 국제법과 상호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해양오염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안전하고, 깨끗하며,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향유를 위한 인권 의무에 관한 유엔 특별 보고서’를 고려하면, 이 결의가 해양법과 건강한 환경권을 상호 연결하는 또 다른 문서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해는 인권 및 기후변화, 독성 및 인권, 인권 및 환경 등과 관련된 유엔특별보고관들이 “유엔해양법협약은 국제인권법과 국제환경법을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해석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유엔해양법협약과 VCLT의 문맥을 볼 때 요구되는 것이다.”라고 언급한 것으로 입증된다고 할 수 있다.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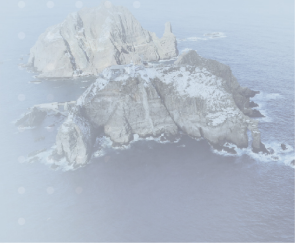
또한 국제법위원회(ILC, International Law Commission)는 2021년 대기 보호 지침 초안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대기 보호와 관련된 국제법 규칙 및 특히 해양법 및 국제인권법의 규칙 [...]을 포함한 기타 관련 국제법 규칙은 조화 원칙 및 체계적 통합 원칙에 따라 양립 가능한 일련의 의무를 확인하기 위해 가능한 범위에서 구분, 해석 및 적용되어야 한다.”⁸⁾

이러한 일련의 국제기구 문서와 법적 문서들은 국제인권법이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국제법의 실체적 내용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관한 국가의무를 고려함에 있어, 특히 체계적 통합 원칙을

7) Amicus brief submitted to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by the UN Special Rapporteurs on Human Rights & Climate Change (Ian Fry), Toxics & Human Rights (Marcos Orellana), and Human Rights & the Environment (David Boyd), ITLOS(Case No.31), 30 May 2023.

8) UN(2021), Draft 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the atmosphere, with commentaries, adopted by the ILC, A/76/10.



국제해양법재판소 ITLOS

근거로 국제인권법을 고려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 및 정책적 함의

ITLOS는 이번 권고적 의견에서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개인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인권과 연계하여 유엔해양법협약을 해석하는데 많은 미흡한 점을 남겼다. ITLOS가 유엔해양법협약을 해석함에 있어 국제인권법의 관여를 침묵하는 것은 아마도 협약이 ITLOS에 위임한 협약의 해석과 적용이라는 전문재판소로서의 지위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의 일련의 문서와 법적 문서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해양법은 독립된 법적 체계로 해석하기 어려우며, 기타 국제법 등 광범위한 규범과 환경에 기반해서 해석과 적용을 실행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ITLOS는 인류의 ‘인류에 대한 고려’ 개념을 체계적 통합 원칙에 따라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외부규칙으로서 적용하여 협약상 국가의무를 해석함에 있어 인권적 함의를 함께 밝히고자 노력해야 한다.

최근 국제인권법에 기반하여 기후변화에 의한 개인의 피해에 대한 피해 방지 또는 배상의 법적 근거를 찾는 노력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럽인권재판소와 미주인권재판소에서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인권에 근거한 환경권의 침해를 인정하고 있어, 이들 재판소의 관할하에 있는 국가 또는 기업은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적절한 또는 약속한 조치를 취하는 데 실패할 경우, 피해를 입은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배상에 관한 소송에 노출될 수 있다. 다만, 국가의 피해 배상 책임을 밝히기 위해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과 피해의 존부, 그리고 피해와 영향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가 이미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해양산성화를 확인하고 있고, 이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가 경험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별 국가 또는 기업은 이러한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어떻게 취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조치의 결과가 기후변화 완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구온도 증가 1.5도씨 이하 억제’를 현재는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개별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NDCs,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를 기후변화 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달성하지 못한 경우, 이러한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 : [1] Khaled Elmahmoud(2024.6.24.), The ITOS Advisory Opinion: Human Rights as a Withered Branch of International Law?, <https://www.ejiltalk.org>



국제해양법재판소

ITLOS

rg/the-itlos-advisory-opinion-human-rights-as-a-withered-branch-of-international-law/

[2] Amicus brief submitted to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by the UN Special Rapporteurs on Human Rights & Climate Change (Ian Fry), Toxics & Human Rights (Marcos Orellana), and Human Rights & the Environment (David Boyd), ITLOS(Case No.31), 30 May 2023.

[3] Enrica Lexie (Italy v India), Provisional Measures, Order of 24 August 2015, ITLOS Reports 2015

[4] International Law Commission(2006), Fragmentation of International Law: Difficulties Arising from the Diversification and Expansion of International Law, A/CN.4/L.682 and add.1, Report of the Study Group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finalized by Mr. Martti Koskenniemi.

[5] Juno Trader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v Guinea-Bissau), Prompt Release, Judgment, ITLOS Reports 2004

[6] M/V SAIGA (No.2)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v. Guinea), Judgment, ITLOS Reports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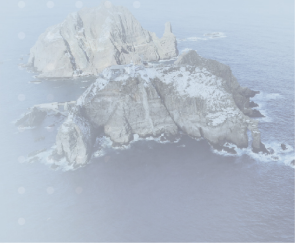
[7] M/V Virginia G (Panama v Guinea-Bissau). Judgment, ITLOS Reports 2014,

[8] Oliver Dörr, Kirsten Schmalenbach (2018),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A Commentary, Springer Link.

[9] Richard Gardier(2015), Treaty Interpret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10] Thir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 (1973-1982), concluded at Montego Bay, Jamaica on 10 December 1982, A/CONF.62/C.3/SR.5,

[11] UN(2021), Draft 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the atmosphere, with commentaries, adopted by the ILC, A/76/10.



아시아 필리핀

전문연구원 이 서 희

필리핀 하원,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필리핀 선박 공격에 대해 유엔총회 개입을 촉구하는 결의안 제출

지난 6월 10일, 남중국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필리핀 선박을 대상으로 한 중국의 침략에 대해 유엔총회의 개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필리핀 의회에 제출되었다.(필리핀 하원 결의안 제1766호)

필리핀 하원 결의안 제1766호 제출 계기

올해에도 필리핀 해안경비대와 어민에 대한 중국 선박의 물대포 공격이 여러 차례 발생하였다. 또한, 2024년 6월 15일부터 시행된 중국 해안경비대 「행정법 집행 절차에 관한 규정」이 2024년 5월 15일에 공포되었다. 중국 해안경비대는 이 규정에 따라 자국 해역에 불법 입국 혐의를 받는 외국인을 재판 없이 최대 60일 동안 구금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필리핀 하원 부대표는 중국이 해양에 대한 필리핀의 합법적 권리를 존중하지 않음으로써 지역안보를 악화시키고, 국제해양법과 원칙에 직접적으로 도전했다고 보았다. 그 결과, 필리핀에서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자행하는 불법행위 문제를 유엔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에 공식적으로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필리핀 하원 부대표는 중국이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당연히 이 논의를 거부하겠지만, 타국 지도자들이 필리핀의 상황을 이해함으로써 이 문제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으며, 더 많은 동맹국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⁹⁾

필리핀 하원 결의안 제1766호의 내용

필리핀 하원 결의안 제1766호는 유엔이 2016년 남중국해 사건 중재판정에 따라 이 사건에 개입해야 한다는 점을 적시하였다. 아울러 이 결의안은 필리핀의 해양 권리 주장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강력한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분쟁 해결

9) 중국은 프랑스, 러시아, 영국, 미국과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 중 하나이다. 한편, 유엔의 주요 정책결정기구인 유엔총회에는 193개 회원국이 있다.



아시아 필리핀

에 관한 법치의 중요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하였다. 무엇보다도, 이 결의안은 2016년 남중국해 판정이 9단선에 따른 중국 정부의 주장을 무효화하는 것과 동시에,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필리핀의 주권적 권리를 지지하였다. 향후, 이 결의안은 남중국해 관련 국제규범과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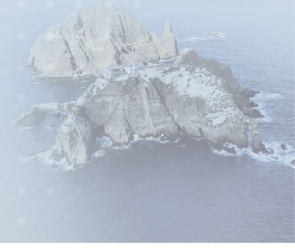
필리핀 하원 부대표의 해결방안 제시

필리핀 하원 부대표는 남중국해와 관련하여 평화적 수단을 통한 분쟁 해결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필리핀 정부는 중국이 불법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해 국제적으로 지지를 얻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적 시사점

이 결의안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관한 국제법적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이 결의안은 우리나라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국제법적 기준에 따라 입장을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들 및 관련국들과의 외교적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우리나라도 필리핀 결의안을 통해 해양 감시 및 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해양법 전문성을 강화하여 자국의 해양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나갈 필요가 있다.

출처 : [1] INQUIRER.NET (2024.6.10.), DFA urged to file resolution before UN on West Philippine Sea dispute, <https://www.inquirer.net/406168/tulfo-urges-dfa-to-file-resolution-before-un-on-west-philippine-sea-dispute/>(검색일: 2024.7.16.)



아시아

필리핀

전문연구원 이 서 희

필리핀 외교부, 대륙붕 외측한계 대륙붕한계위원회 제출

2009년,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는 대륙붕 확장을 위한 공동신청서를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당시, 중국과 필리핀은 이 공동신청서에 항의하였다.

현재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자국의 대륙붕을 확장하고자 한다. 지난 6월 14일 필리핀 외교관들은 10년 이상의 과학연구를 종합하여 남중국해 팔라완 지역에서 확장한 대륙붕 범위에 관한 정보를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제출하였다. 필리핀 외교부는 남중국해에서 자국이 독점적으로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대륙붕 범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줄 것을 유엔에 요청하면서 이는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항의하는 조치임을 밝혔다. 대륙붕한계위원회는 2024년 1월에서 3월 사이 개최될 회의에서 필리핀의 제출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필리핀이 주장하는 대륙붕과 베트남과 말레이시아가 확장하려는 대륙붕이 중첩된다는 점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베트남은 필리핀이 확장하려는 대륙붕 외측한계와 해양경계에 관해 협의하고자 한다.

국제법상 대륙붕

유엔해양법협약 제77조 제1항에 따르면, 연안국은 대륙붕을 탐사하고, 그 천연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주권적 권리를 갖는다. 연안국은 최소 200마일의 대륙붕을 갖게 되며, 이는 국제관습법으로 간주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 제5항은 기선으로부터 최대 350마일까지 대륙붕을 확장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대륙붕의 최대허용범위를 언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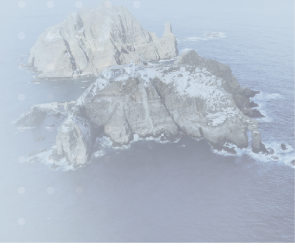


그림 1. 유엔해양법협약상 대륙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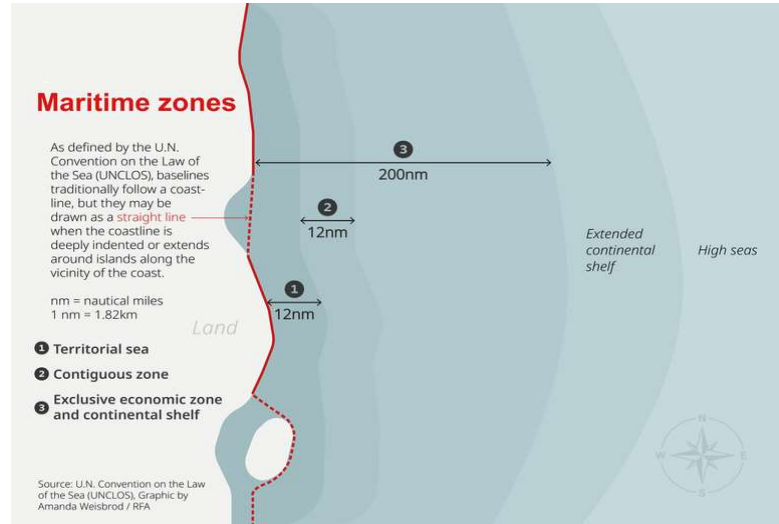


그림 출처: Radio Free Asia(2024.6.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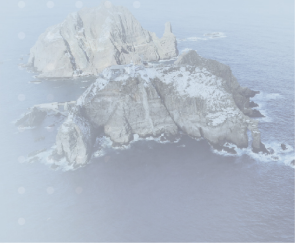
필리핀 입장

필리핀은 기선으로부터 최대 350마일까지 대륙붕을 확장할 수 있다는 유엔해양법협약을 근거로 대륙붕에 대한 천연자원 탐사 및 개발을 위한 독점적 권리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필리핀은 지난 10월 30일에 개최된 베트남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대륙붕 외측한계 공동 제출을 위한 협력 의사를 밝혔다.

베트남 입장

베트남은 필리핀의 대륙붕 주장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먼저, 베트남은 스프래틀리 군도 및 파라셀 군도에 주권이 있으며, 이에 상반된 주장에 관해 필리핀과 논의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베트남은 유엔해양법협약이 대륙붕 외측한계를 설정하고 이를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는 연안국의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동시에 다른 연안국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익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베트남 외교부는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필리핀과 협상함으로써 필리핀과 상호 이익이 되는 해결책 모색을 위해 논의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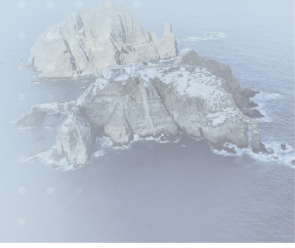
아시아

필리핀

정책적 시사점

필리핀이 남중국해에서 중국과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국의 대륙붕 외측한계 제출을 결정한 이유는 남중국해가 국제해상 무역의 핵심 통로이기 때문이다. 남중국해는 우리나라에도 매우 중요한 지역이기에, 관련 국가들 간 갈등에 대해 중립을 유지하면서, 국제법과 지역안정을 존중하는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

출처 : [1] Philippine Information Agency(2024.5.27.), Philippines denounces China's new coast guard regulations, <https://www.pia.gov.ph/philippines-denounces-chinas-new-coast-guard-regulations/>(검색일: 2024.7.16.)
[2] Radio Free Asia(2024.6.21.), <https://www.rfa.org/english/news/vietnam/vietnam-sea-boundary-06212024050829.html>(검색일:2024.7.16.)
[3] tuoi tre news(2024.6.21.), Vietnam clarifies stance on Philippines' extended continental shelf claim, <https://tuoitrenews.vn/news/politics/20240621/vietnam-clarifies-stance-on-philippines-extended-continental-shelf-claim/80551.html>(검색일: 2024.7.16.)



아시아

베트남

전문연구원 이 서 희

베트남, 제34차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 회의에서 협약 이행 촉구

베트남 대표는 2024년 6월 10일~14일 뉴욕에서 개최된 제34차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 회의에서 유엔해양법협약의 이행을 촉구하였다. 베트남 대표는 해양오염, 자원의 과도한 개발, 새로운 해양기술의 발전, 다양한 유형의 해상범죄 출현, 지역 긴장의 고조, 해양 안전과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의 일방적 행위 등 해양과 관련한 몇 가지 과제를 강조하였다. 무엇보다도,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이 책임감 있게 해양정책을 수행해야 하며, 평화·안정·번영을 위한 분쟁을 공동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베트남은 이 회의에서 남중국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베트남은 각 국가가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해양수역(maritime zones)을 설정하고, 주권,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을 행사해야 하며,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자세를 유지했을 때, 남중국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안정적인 환경이 보장될 수 있다고 하였다. 아울러 베트남은 주변국과의 협력을 통한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DOC: Declaration on the Conduct of Parties in the South China Sea)'의 이행과 남중국해 행동강령(COC: Code of Conduct)의 신속한 마무리를 위해 자국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정책적 시사점

우리나라는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으로서 이 협약 이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각 국의 해양권익 보호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중립적이고 균형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베트남을 비롯한 주변국들과 해양 문제에 관한 대화 및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차원의 해양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남중국해 행동강령이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림 2. 뉴욕에서 개최된 제34차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 회의



그림 출처: Viet Nam News(2024.6.13.)

출처 : [1] Viet Nam News(2024.6.13.), Việt Nam calls for continued goodwill in implementation of UNCLOS 1982, <https://vietnamnews.vn/politics-laws/1657402/viet-nam-calls-for-continued-goodwill-in-implementation-of-unclos-1982.html>(검색일: 2024.7.16.)



아시아

베트남

전문연구원 이 서 희

베트남,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 추진

2016년 상설중재재판소 판정에도 불구하고, 주변 국가 간 영토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주변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해하고 있다. 이에 베트남은 2023년 9월에 미국과의 관계를 격상하였고, 같은 해 11월부터 남중국해에서 인공섬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은 남중국해에 대한 자국의 입지를 높이려면 인공섬 건설을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자국의 인공섬 건설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필리핀에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베트남이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건설하기로 결정한 계기는 중국 해안경비대 함정이 필리핀 선박을 차단했을 때 발생했던 양국 간 갈등 때문이었다. 호치민 법과대학 호앙 비엣(Hoang Viet) 교수는 베트남이 남중국해에서 자국을 보호하려면 인공섬 건설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베트남은 인공섬 비행장 건설을 통해 인력과 물자를 신속하게 이동하고 해상 항공 순찰을 수행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베트남은 악천후로 인해 조난된 어부들의 수색 및 구조작전을 지원하고, 이웃 국가들의 불법 조업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무엇보다도, 호앙 비엣은 베트남의 인공섬 건설 목적이 단순히 남중국해 관련국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국가를 위협 또는 공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적 시사점

우리나라는 주요 경제 협력국이자 남중국해 관련국인 베트남과의 외교적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뿐만 아니라, 아세안, 미국, 중국 등 남중국해 관련국과의 협력을 통해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출처 : [1] VOA(2024.6.27.), Vietnam confronts China with island building in South China Sea, <https://www.voanews.com/a/vietnam-confronts-china-with-island-building-in-south-china-sea/7675824.html> (검색일: 2024.7.16.)



3개월 내 행사계획

제34차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총회 | 2024년 6월 10일 ~ 6월 14일 / 뉴욕

- 주요 내용 국제해저기구 사무총장 보고서 검토, 대륙붕한계위원회 위원장 보고서 검토, 국제해양법재판소 예산 사항 검토, 대륙붕한계위원회 위원 2명 선출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에 관한 정부간회의 | 2024년 6월 24일 ~ 6월 26일 / 뉴욕

- 주요 내용 국가관할권 밖인 공해와 심해저의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 논의

로도스 아카데미 | 2024년 6월 23일 ~ 7월 12일 / 그리스 로도스섬

- 주요 내용 유엔해양법협약 및 국제규범 현안 관련 강의

제75차 회기 국제법위원회 | 2024년 7월 1일 ~ 8월 2일 / 제네바

- 주요 내용 Bogdan Aurescu(루마니아) 위원 사임에 따른 신규 위원 선출, 국제법위원회 창립 75주년 기념행사, '국가 책임에 관한 국가 승계', '국제법과 관련된 해수면 상승', '해상에서의 해적 행위 및 무장강도의 예방 및 억제' 등 보고서 검토

제61차 대륙붕한계위원회 | 2024년 7월 8일 ~ 8월 23일 / 뉴욕

- 주요 내용 신규 선출된 위원회 위원의 선언, 소위원회 및 기타 보조기관에 신규 위원 임명, 부분 수정안 검토(모리셔스, 팔라우, 포르투갈, 스페인, 쿠바, 모잠비크 등 제출분), 절차 규칙 개정, 과학기술자문 위원회 위원장 보고서 등 검토

국제법평론회 국제법 캠프 | 2024년 7월 18일 / 연세대학교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장

- 주요 내용 신기술과 인권 : 국제인권법 논의를 중심으로, 해양과학기술의 발전과 국제해양법

국제법평론회 하계학술대회 | 2024년 6월 19일 / 연세대학교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장

- 주요 내용 과학기술의 발전과 국제해양법, 국제해양법상 주의의무와 잔존권리의 재조명